

<p>3. 입안사유 기존 상세계획구역과 신당동 재개발구역 사이에 위치한 토지에 대하여 계획있게 개발을 유도하고,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며, 체계적인 도시경관 관리를 위해 추가 지정코자 함.</p> <p>4. 추진경위 ○'97.10.17~'97.10.30 : 공람공고 공람공고중 의견접수 : 없음. ○'97.10.10(1차), 98.4.7(2차) : 상세계획 자문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위원회 심의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....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</u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20%;">의안 번호</td> <td style="width: 10%; text-align: center;">104</td> <td style="width: 30%;">제출년월일 : 1998. 10. 7.</td> <td style="width: 30%;">제 출 자 : 서울특별시</td> </tr> </table> <p>1. 안건명 : 도시계획시설(도로) 변경결정 2. 입안내용 : 북부간선 연결도로 상월곡램프 설치로 인한 도로변경</p>	의안 번호	104	제출년월일 : 1998. 10. 7.	제 출 자 : 서울특별시								
의안 번호	104	제출년월일 : 1998. 10. 7.	제 출 자 : 서울특별시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30%;">위 치</th> <th style="width: 30%;">규 모</th> <th style="width: 40%;">비 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하월곡동 1의 82~ 5의 2호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· 폭40m→44m · 연장 215m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북부간선연결도로 down ramp 설치구간 차량진입도로 확보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위 치	규 모	비 고	하월곡동 1의 82~ 5의 2호간	· 폭40m→44m · 연장 215m	북부간선연결도로 down ramp 설치구간 차량진입도로 확보						
위 치	규 모	비 고											
하월곡동 1의 82~ 5의 2호간	· 폭40m→44m · 연장 215m	북부간선연결도로 down ramp 설치구간 차량진입도로 확보											
<p>3. 입안사유 ○북부간선연결도로는 왕복6차로 고가도로로 건설되며 상월곡 down ramp를 주택가와 연결하여 설치하는 관계로 차량진입도로가 확보되지 않아 동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도로변경결정.</p> <p>4. 추진경위 ○'90.10.13 :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(건고시 제695호) ○'96.10.14 : 도시계획시설(도로)변경결정(서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고시 제1996-284)(35m→40m)</p> <p>○'98.8.18 : 도시계획시설(도로) 변경결정 요청(건설국)</p> <p>5. 참고사항 ○주민의견 청취현황 - 공람공고기간 : '98. 9. 4~9.18 - 의견청취 방법 ┌ 2개 일간지(한국, 서울신문) └ 개별통지(17인) - 주민의견(접수): 1건</p>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의견제출자</th> <th row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의견내용</th> <th row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검토사항</th> </tr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주소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성명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강남구 압구정동 481 현대APT 92-602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정태건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건물 및 토지확대 보상요구 - 성북구 하월곡동 10-83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상시 검토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	의견제출자		의견내용	검토사항	주소	성명	강남구 압구정동 481 현대APT 92-602	정태건	건물 및 토지확대 보상요구 - 성북구 하월곡동 10-83	보상시 검토
의견제출자		의견내용	검토사항										
주소	성명												
강남구 압구정동 481 현대APT 92-602	정태건	건물 및 토지확대 보상요구 - 성북구 하월곡동 10-83	보상시 검토										
<p>※ 건물소유주 6명 사전 동의</p>													
<p>○유관부서 검토의견 < 성북구 > · Ramp 설치구간 보도확폭시행(2m→3m) 및 종점 예각부 가각정리 요망(하월곡동5-2호) < 도시계획과 > - 이견 없음. < 도시계획상임기획단 > - 이견 없음.</p> <p>○저촉토지 및 건물 현황 - 토지 : 17필지 993㎡ ┌ 사유지 16필지 957㎡ └ 공유지 1필지 36㎡ - 건물 : 12동 2,706㎡</p>	<p>○공사개요 - 공사기간 : '99. 3 ~ 2000.12 - 공사비 : 22억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....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지하철운입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</u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20%;">의안 번호</td> <td style="width: 10%; text-align: center;">84</td> <td style="width: 30%;">제출년월일 : 1998. 9. 18.</td> <td style="width: 30%;">제 출 자 : 서울특별시</td> </tr> </table> <p>□건 명 : 지하철운입 조정 □제안사유 ○운송원가에 못 미치는 낮은 운임 수준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철 운영의</p>			의안 번호	84	제출년월일 : 1998. 9. 18.	제 출 자 : 서울특별시						
의안 번호	84	제출년월일 : 1998. 9. 18.	제 출 자 : 서울특별시										

재정난 해소를 위해 검토한 지하철운임조정안에 대하여

- 도시철도법시행령 제19조의2 조항과 서울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운임조정에 반영코자 함.

□제안내용 : 지하철운임 조정안(별첨)

□참고사항

- '98. 1.16 지하철공사, 도시철도공사 운임인상 요청
- '98. 5.28 철도청 운임인상 협조요청(철도청→시)
- '98. 8.26 철도청 운임인상 협조요청(철도청→시)
- '98. 8.29 지하철공사, 도시철도공사 운임인상 요청

- 9.11 철도청 운임인상 협조요청(철도청→시)

지하철 운임 조정(안)

□현행 운임체계

- 구역제 : 시계내를 7개 구역으로 분할
 - 1구간 : 2개구역까지 450원
 - 2구간 : 2개구역 초과시 550원
- 이동구간제 : 7개 구역 외곽지역에 대하여 거리별로 구분
 - 승차역 기준 10km까지 기본운임 450원
 - 10km 초과시 매 5km마다 초과운임 66원가산

□운임조정(안)

- 조정내역

구	분	현	행	1 안	2 안	3 안
구역제	1구간	450원	500원	530원	550원	
	2구간	550원	600원	630원	650원	
이동구간제	5km마다	66원	73원	77원	80원	

○시행시기 : 철도청과 협의

□집행부 의견 : 제 2 안

書面答辯書

○柳基洪議員

(質疑要旨)

아현동 웨딩의 거리, 북아현동 가구의 거리는 자치구와 협의하여 문화의 거리로 조성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견해는?

(答 辯)

○현재 서울시에는 15개 자치구에서 20개의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.

○문화의 거리 조성은

- 자치구 단위로 주민요청이나 자체적인 필요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거리 특성을 살려 나가기 위하여
 - 전통적으로 상징적인 거리 명칭부여와 정례적인 거리축제 행사 유치
 - 가로환경 조성, 문화공간 확보 등 각 자치구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

법령이나 제도적인 틀 속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.

- 따라서 현재로서는 자치구의 문화적 감각과 기획력 그리고 투자우선순위를 문화에 두느냐가 특화거리 조성사업의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.

○현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아현동 지역의 웨딩거리와 가구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는

- 자치구에서
 - 가로등, 가로수, 보도블럭 개선 등 가로환경 조성
 - 결혼사진, 여행, 혼수품 등 유사업종의 유치
 - 신촌문화축제, 가구축제 등 거리축제 행사 개최와 홍보활동 등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
 - 우리 시에서도 자치구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가로경관조성과 문화적 요소 투입 등 문화적 환경 조성사업에 대하여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.

○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문화적인 특성이 집약된 지구나 거리를 지원하고 조장할 수 있는